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9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6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9. 1~9, 29)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9.4	전기뜸질기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
9.7	전열보오드	내방	주로 화재의 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책임을 안정기 제조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것
9.11	주서기	전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
9.12	전기매트	내방	결함의 입증여부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판정은 후에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데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9.18	라디오수신기	내방	대형 양판점 납품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 형태의 강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중
9.20	전기매트	내방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 한계는?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9.22	배선기구	내방	부품 납품업체와의 책임(보상문제)의 한계는?	계약서 작성 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규정, PL보험 가입권고
9.27	자동세정	내방	중국에 자체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중국 공장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